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
(Usance 송금 거래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20 년 월 일

본 인 : _____(인)

주 소 :

본인은 하나은행(이하"은행"이라 합니다)과 체결한 년 월 일자 외국환거래 약정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은행직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되는 거래 방식의 앞에 있는 "□"안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방식	내용
□ 사전송금방식 Usance 송금	수입기업인 본인이 거래 상대방인 수출기업과 사전송금 방식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수출기업 앞 수입대금 지급 및 기간에 대한 신용공여를 신청하는 거래 방식 (단, 사전송금방식을 선택하면 아래 사후송금방식도 거래 할 수 있음)
□ 사후송금방식 Usance 송금	수입기업인 본인이 거래 상대방인 수출기업과 사후송금 방식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에 수출기업 앞 수입대금 지급 및 기간에 대한 신용공여를 신청하는 거래 방식

제 1조 (용어의 정의)

① "Usance 송금"은 수입기업인 본인이 거래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은행이 해외인수은행에 인수요청 전문을 발송하여, 해외인수은행이 수출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약정한 만기일에 본인이 원금 및 이자 등을 결제하는 상품입니다.
② "인수"라 함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해외인수은행이 수출기업 앞 대금을 지급하고 만기일을 통보하여 온 것을 의미합니다.
③ "인수수수료"라 함은 해외인수은행의 인수 통보로 인수가 확정 됨에 따라 본인이 은행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④ "만기 상환액"이라 함은 해외인수은행이 청구한 상환 원금, A/D Charge 및 건별 취급수수료를 의미합니다.
⑤ "A/D Charge"라 함은 해외인수은행이 수출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인수이자 및 인수할인료를 의미합니다.
⑥ "영업일"의 기준은 본 거래와 관련한 은행 및 관련된 해외인수은행의 소재 국가의 영업일 기준을 모두 적용합니다.

제 2조 (거래조건)

① 본인은 이 약정서에서 정의된 은행의 Usance 송금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외인수은행이 청구한 만기상환액을 결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② 본인은 Usance 송금 가능 통화가 미합중국법화, 유럽연합 유로화, 일본국법화, 중화인민공화국법화임을 확인합니다.
③ 본인은 해당 금융 거래 시 수출기업의 신용상태, 무역거래 자체 등에 관하여 은행은 지급보증 책임만을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④ 본인은 Usance 송금을 위한 필수 정보인 계약정보, 선적정보, 송금정보 등을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은행에 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이의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인하여 송금이 처리되지 않거나 송금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⑤ 본인은 송금신청 희망일을 Usance 송금 신청일 이후 3영업일로부터 7영업일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및 해외인수은행의 조사를 위하여 이 일자는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⑥ 본인은 사후송금방식 Usance 송금은 수입물품의 선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것임을 확인하고, 사전송금방식 Usance 송금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입물품이 선적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⑦ 본인은 해외인수은행이 청구하는 A/D Charge 및 기타 건별 취급수수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⑧ 본인은 본인 및 수출기업이 UN, 미국, EU, 영국 기타 국제 경제제재 대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며, 관련이 있는 경우 거래가 거절되거나 자산이 동결되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⑨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거래의 최장 만기일이 신청일로부터 365일임과 만기 연장이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⑩ 본인은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조건이 수입기업 부담인 수입거래(가격조건이 EXW, FCA, FAS, FOB, CFR, CPT)의 경우 거래 신청 시 보험서류를 은행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⑪ 본인은 사전송금방식 Usance 송금을 신청할 경우, 선적 예정일이 계약서나 Invoice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청 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⑫ 본인은 사전송금방식 Usance 송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 후 2개월 이내 선적 사실 확인이 가능한 운송서류를 은행에 제출할 것을 확약하고, 이의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3-09-0010(2-1) (2025.10 개정)
(보존년한 : 완제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약관-099 호(2025.08.28)

하나은행

제 3조 (거래 신청 및 취소)

① 본인은, Usance 송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전자적시스템의 Usance 송금 신청 화면에 신청내역을 입력하거나 Usance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합니다.

② 제1항 의 신청내역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의 사항과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신청금액, 송금희망일, 이용기간 또는 만기(상환일)
2. 선적정보 (계약서번호, 상품명세, 가격조건, HS코드, 원산지, 수출국, B/L번호 및 일자, 선적항, 선적국가, 도착항, 도착국가 등)
3. 수취인 및 수취은행 정보(수취인명, 수취인 주소, 수취계좌번호, 수취은행 BIC, 수취은행명 등)
4. 사전송금방식의 경우 선적 예정일
5. 사후송금방식의 경우 운송서류번호, 선적일

③ 거래 신청의 취소는 해외인수은행 앞 인수 신청 전문의 발송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제 4조 (Usance 송금 거래에서의 신청 시간)

'Usance 송금' 거래를 신청한 경우, 신청 당일의 낮 12:00시(정오)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 신청분은 은행의 익영업일에 신청 접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제 5조 (Usance 송금의 만기산정)

① Usance 송금 거래의 만기일은 신청일로부터 365일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인수은행 소재 국가의 영업일 규정에 따라 최장 만기일 이내에서 당해 해외인수은행의 다음 영업일 또는 이전 영업일로 만기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 6조 (신청 및 조건변경 수수료 부과)

① 본인은 Usance 송금 신청 시 은행에 건당 ₩20,000원의 신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은 만기일 단축 등의 조건변경을 신청 시 은행에 건당 ₩30,000의 조건변경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7조 (인수수수료 납부)

① 본인은 은행의 Usance 송금 이용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인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수수수료 = 해외인수은행 인수금액 x 인수수수료율(연) x 보증기간 / 360 x 매매기준율(미달러화, 유로화, 중국위안화)
  = 해외인수은행 인수금액 x 인수수수료율(연) x 보증기간 / 365 x 매매기준율(일본 엔화)
* 보증기간 = 해외인수은행 인수 일자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일수
* 인수수수료율(연) : 신용등급에 따른 인수수수료율 (영업점 게시물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② 인수수수료는 원화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8조 (상환)

① 본인은 본인이 Usance 송금을 신청한 경우 그 해당 만기일에 해외인수은행이 청구한 만기 상환액(상환원금, A/D Charge 및 건별 취급수수료 등)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② 본인은 본인이 조기상환을 신청한 경우 그 해당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 금액을 전액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 9조 (대지급)

① Usance 송금 거래에서 본인이 만기 상환액을 그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만기일의 익영업일에 아래의 산식에 의해 대지급 실행하여 동 만기 상환액을 해외인수은행 앞 송금합니다.

* 대지급금 = 만기 상환액 x 대지급실행 당시 전신환매도율

② 본인은 제1항에 의해 은행이 실행한 대지급금 원금 및 제10조에서 정한 대지급금이자 적용 기준에 의해 발생한 연체이자를 함께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 10조 (대지급금이자 적용 기준)

① 본인은 제 8조의 만기일에 만기 상환액 전액을 은행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은행이 대신 지급한 후 대지급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아래의 산식에 따른 대지급금이자(지연배상금)를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지급금이자 = 미상환금액(또는 대지급금) x 대지급금이율 x 대지급기간 / 365
* 대지급기간 = 미상환금액발생일(또는 대지급금발생일)로부터 미상환금액(또는 대지급금)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
* 대지급금이율(연) : 인수수수료율 + 3%와 15%중 낮은금리

② 대지급일에 대지급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1일에 대한 대지급금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11조 (그 밖의 처리기준)

① 은행은 Usance 송금과 관련한 수수료 징수 기준을 은행 홈페이지에 고지하기로 합니다.

②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외환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외국환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 추가약정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3-09-0010(2-2) (2025.10 개정)
(보존년한 : 완제일로부터 10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약관-099 호(2025.08.28)

하나은행